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환경수자원위원회 이 봉 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1선거구 이봉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10월 15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도로, 하수도 등 굴착공사로 인해 상수도관 누수사고와 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르면 수도시설이 손괴되었을 경우, 실제 발생한 공사비(직접공사

비)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복구를 위한 공사비 이외에 자산가치 훼손, 시설복구 경비 등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안정적인 수도시설 관리와 시민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원인자부담금 원상복구비를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구분’하고, ‘나. 수도시설 잔존가치 환산한 ‘간접복구비’ 적용한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